

### 중대한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합니다

#### ○ 학생부 기록·관리 강화

- ☑ 보존기간 연장 **최대 2년 최대 4년**
- ☑ 심의 삭제 요건 강화

#### ○ 조치사항 대입 반영 확대

- ☑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**수능, 논술, 실기/실적 위주 전형도 반영**  
※ 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, 2026학년도 대입부터 의무화 반영

### 피해학생 중심으로 보호조치가 개선됩니다

- 3일 > 7일** 즉시 분리기간 연장
- 학교장 긴급조치 강화
- 피해학생의 분리요청권 도입
-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
-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도입

### 단위학교에 대한 학교폭력 대응력을 제고합니다

#### ○ 학교폭력 제로센터 운영

- ☑ 피해회복·관계개선, 학교 사안처리, 피해학생 법률 서비스 등 통합제공

#### ○ 학교의 교육적 조정기능 강화

- ☑ 학교장 자체해결 범위 확대
- ☑ 교권보호 및 학교폭력 책임교사 업무 여건 개선
- ☑ '학교·학생·학부모' 간 책임계약 시범운영



### 학생 사회·정서교육과 인성교육을 지원합니다

#### ○ 언어·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학부모 교육 강화

#### ○ 학생 사회·정서 지원체계 구축

#### ○ 다양한 인성교육을 활성화

- ☑ 학교스포츠클럽(1교당 11개 → 1교당 20개)
- ☑ 예술동아리 확대(1교당 1개 → 1교당 2개)



**학교폭력 없는  
안전하고  
정의로운 학교를  
만들겠습니다**

「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」 발표('23.4.12)

「학교폭력예방법」 개정('23.10.6) 및 시행('24.3.1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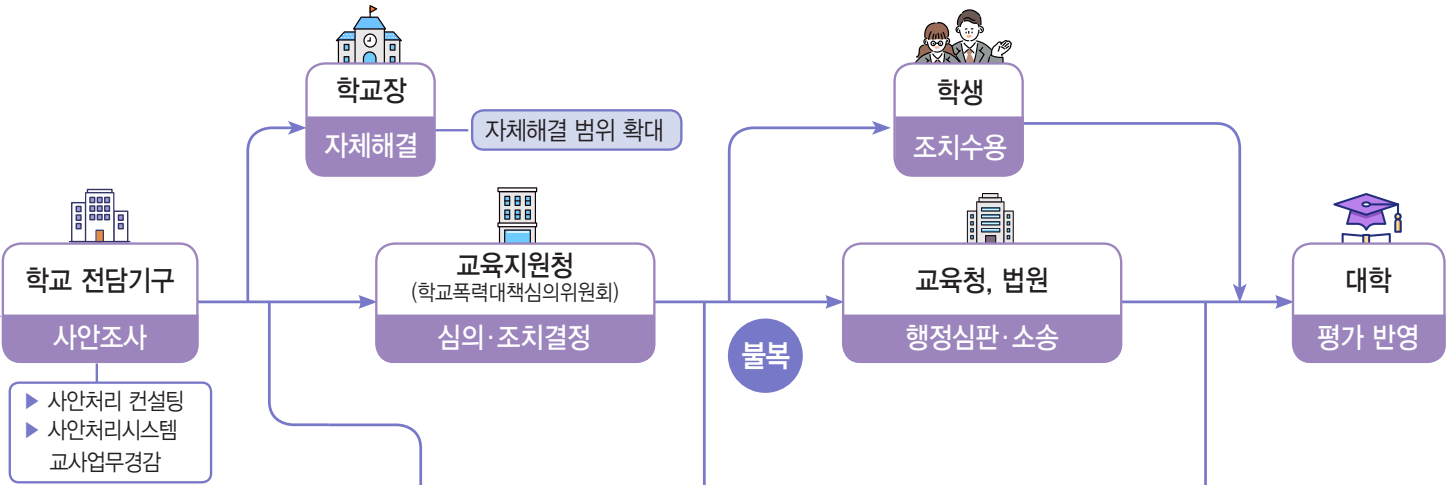
# 「학교폭력예방법」 개정으로 학교폭력 대응절차 이렇게 달라집니다



## ☑️ 사안절차도



### 학교폭력 발생



**학교 전담기구 사안조사**

- ▶ 사안처리 컨설팅
- ▶ 사안처리시스템 교사업무경감

**학교장 자체해결** (자체해결 범위 확대)

**교육지원청 (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) 심의·조치결정**

**학생 조치수용**

**교육청, 법원 행정심판·소송**

**대학 평가 반영**

**불복**

- 강화** 즉시분리(3일~7일)
- 강화** 긴급조치(조치병과 가능)
  - 2호 조치(접촉·협박·보복 금지) 의무화 (위반시, 6호 이상 가중 처분)
  - 7호(학급교체) 조치 가능
  - 6호(출석정지) '심의결정시까지' 가능
- 신설**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요청권 부여
- 신설**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(책임교사) 운영

- 신설**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(교육청 지원단)
  - ※ 피해회복·관계개선지원단
- 강화** 심리·의료·법률 지원
- 강화** 심의전 자퇴 불가



- 신설**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
- 신설** 범죄피해 평가제도 적용
- 강화** 조치사항 신속이행
- 신설** 분리요청권(집행정지시)
- 신설** 법률서비스 제공 (국선대리인 선임)

- 강화** 기록 보존 기간(2년 → 4년)
- 신설** 수시 및 정시 반영
- 신설** 자퇴생 대입 반영
- 신설** 삭제 심의 시 피해학생 동의 추가
- 신설** 학교폭력 기재 일원화 - '학교폭력 조치 상황란' 신설

## 학교폭력 예방·대응 인프라 강화



-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운영**
- ✓ 사안처리 컨설팅 지원
  - ✓ 피해회복·관계개선 지원
  - ✓ 법률서비스 지원

- 피해학생 맞춤형 지원 체계 강화**
- ✓ 국가수준의 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설치·운영
  - ✓ 피해학생 전문지원 기관 확대(303개소 → 400개소)
  - ✓ 법률구조서비스·국선대리인·마을번호사
  - ✓ 병·의원 협약·위탁, 정신건강 자문의

- 학교폭력 조기 감지 체계 구축**
- ✓ 학교-경찰(SPO) 협업 감지
  - ✓ 사이버폭력 감지 서비스
  - ✓ 지능정보기술 활용 감지 기반 마련

## ☑️ 주요내용

가해학생 조치	전학(8호) 조치 학생부 기록	출석정지(6호) 학급교체(7호) 조치 학생부 기록	접촉·협박 등 금지(2호)	대입반영
□ 졸업 후 최대 2년 보존	□ 원칙: 졸업 후 최대 2년 보존 □ 예외: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기록 삭제 가능	□ 위반시 조치 병과 또는 가중	□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로 학교폭력 조치 사항 반영	
• 졸업 후 최대 4년 보존	• 원칙: 졸업 후 최대 4년 보존 • 예외: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기록 삭제 가능 * 심의요건 강화: 피해학생 동의, 가·피해자간 행정심판·소송 진행 상황	• 접촉·협박·보복 행위에 비대면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 • 학교폭력 사안 발생 즉시 조치 의무화 • 위반시 6호 이상 조치 의무화	• 학생부, 수능, 논술, 실기/실적 위주 전형에 조치사항 반영 • 자퇴한 가해학생의 '조치사항도' 학생부에 표기하여 대입 반영 지원	

피해학생 보호	즉시 분리 기간	학교장 긴급조치	가해학생 조치 불복시	피해학생 지원
□ 3일	□ 1·2·3·5호 □ 6호(출석정지, 10일 이내)	□ 피해학생 불복 사실을 알 수 없어 진술권 보장에 한계	□ 피해학생 서비스 지원 미흡	
• 7일	• 1·2·3·5호 • 6호(출석정지, '심의결정시' 까지) • 7호(학급교체) ※ 피해학생에게도 6·7호 요청권 부여	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불복사실 통지하여 진술권 보장 • 심사·소송 참가	• 피해학생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법률, 의료 서비스 등을 매칭·안내	

정신대리인 제고	사안처리 지원	학교의 권한	학교폭력 대응 여건
□ 체계적 지원체계 미흡	□ 「학교폭력예방법」 등 법령, 매뉴얼에 근거	□ 「학교폭력예방법」 등 법령, 매뉴얼에 근거	□ 학교폭력 전담 업무 과중에 따른 기피
• 학교폭력 제로센터 설치 등을 통한 현장 지원	• 「학교폭력예방법」 등 법령, 매뉴얼에 근거 • 「학교폭력 책임계약」	• 4세대 나이스와 연계한 '학교폭력 사안처리 시스템' 운영 • 학교폭력 책임교사 수업경감	

기밀적·포화	심리·정서 교육	인성·체육·예술 교육	예방교육
□ 학교 개별적으로 운영, 체계적 지원체계 미비	□ 학교스포츠클럽 평균 1교당 11개 □ 예술동아리 평균 1교당 1개	□ 교과 연계, 체험 중심 예방교육	
• 관련법 제정, 전담부서 신설 등 학생 사후·정서 지원체계 구축	• 학교스포츠클럽 평균 1교당 20개 • 예술동아리 평균 1교당 2개 • 국가교육위(인성교육특위) 협력	• 교과 연계, 체험 중심 예방교육 • 디지털 기술 및 학생 친화적 매체 활용	